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1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오기형 · 이훈기 · 이소영
홍기원 · 이강일 · 한정애
김상욱 · 김남근 · 진성준
박홍배 · 최혁진 · 김현정
민병덕 · 안도걸 · 이주희
이정문 · 박해철 · 허영
장종태 · 박찬대 · 최민희
이재강 · 문금주 의원
(23인)

제안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기주식이 자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자기주식의 성격

가.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41조의3 제1항).

나. 자기주식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

1)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2항).

2)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 제3항).

다.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2.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41조의4제1항).

나.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2항).

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관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3항).

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안 제635조제3항 제9호·제10호).

3.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처분 방법

가. 자기주식 소각의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함(안 제342조제1항).

나.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안 제342조제2항·제3항).

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4. 기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경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되, 소각의무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 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의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및 제462조부터 제462조의4까지의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3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

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제3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

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편 제4장 제11절에 제53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6(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 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제635조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 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나.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상환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상환기간이 도과한 날

2.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35조제3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5조제3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u> <u>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u> <u>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u> <u>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u> <u>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u> <u>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u> <u>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u> <u>다.</u> <신 설>	<u>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u> <u>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u> <u>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u> <u>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u> <u>의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및</u> <u>제462조부터 제462조의4까지의</u> <u>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u> <u>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u> <u>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u> <u>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u> <u>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u> <u>수 없다.</u> <u>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u> <u>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u> <u>다.</u> <u>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u> <u>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u> <u>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u> <u>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u> <u>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u> <u>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u> <u>받을 수 있다.</u> <u>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u>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회사주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회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u>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u> <u>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u> <u>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u> <u>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u> <u>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u> <u>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u> <u>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u> <u>납입기일</u> <u>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u> <u>분방법</u>	<u>의 종류와 수</u> <u>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u> <u>주식 비율의 변화</u> <u>4. 예정된 보유 기간</u> <u>5. 예정된 처분 시기</u> <u>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u> <u>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u> <u>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u> <u>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u> <u>하게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u> <u>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u> <u>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u> <u>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u> <u>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u> <u>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u> <u>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u> <u>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u> <u>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u> <u>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u> <u>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u> <u>러하지 아니하다.</u> <u>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u> <u>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u> <u>납입기일</u>
--	--

<신 설>

<신 설>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
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
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
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
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 자
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회사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
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
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
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
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
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
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

<신 설>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② (생 략)

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2조의16(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신 설>

<신 설>

④ (생략)

③ _____

1. ~ 8. (현행과 같음)

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
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④ (현행과 같음)